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(부동산 거래의 신고)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“수취인불명”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7일

평택시



- 공 고 명 :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예고
- 공고기간 : 2020. 7. 7. ~ 2020. 7. 22.
- 공고방법 : 평택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, 전국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
- 공고내용

1. 처분의 제목	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예고 공시송달	
2. 당 사 자	성 명	이 * 임
	주 소	경기도 화성시 동탄숲속로 95, 818동 503호(능동, 광명메이루즈)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『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』 제3조 위반	
4. 처분내용	과태료 : 금53,100,000원	
5. 법 적 근 거	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8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	
6. 문 의 처	평택시청 민원토지과(☎031-8024-2881)	